

# 2023 인천 성공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2023 인천 성공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인천의 대표하는 킬러콘텐츠를 만들어갈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27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 인천 성공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 목적

-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한 기업을 선발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일(2023. 5. 예정)~2023. 11. (약 7개월)
- 지원규모 : 총660백만원, 총 4개 과제 지원
- 지원내용 : 문화 콘텐츠 초기 개발부터 상용화 위한 개발고도화까지 지원(과제당 최대 2년)

	분야	선정규모	기본 지원금	인센티브
지원내용	자유공모 (1차년도)	3개 과제	과제당 160백만원 내외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과제당 10백만원 내외 ※분야 무관 2개사
	지정공모 (2차년도)	1개 과제	과제당 160백만원 내외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조정	
지정공모 상세내용	분야	선정규모	주요내용	기본 지원금
	2차년도	1개 과제	1차년도 최우수기업 대상 후속지원 (1차년도 아이템 고도화 지원)	과제당 160백만원 내외

## ○ 지원대상 : 콘텐츠기업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지원대상 : 본사 인천 소재 문화콘텐츠 기업(법인사업자)으로 아래요건에 충족
  - ① 공고일 기준 창업일(사업등록증 상 설립일자)로부터 3년 이상인 기업  
(단,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의 설립일자를 창업일로 봄)
  - ② 콘텐츠 기획·제작 업종(유통·서비스 분야 제외)
    - \* 지역 외 기업 지원 가능(사업 선정 후 2개월 내 본사 이전 필수)
  - ③ 콘텐츠를 제작하여 상용화(판매 혹은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④ 그 외 필수, 택일 조건에 충족하는 기업(자세한 내용은 아래 "세부지원계획-지원요건"에서 세부요건의 "지원대상 자격" 참조)

## ○ 지원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인천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지원센터 지원사업(인천 콘텐츠 성장 단계, 성공단계)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국비재원사업 지원금액은 제외함)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또는 정부 및 지자체,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한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 위 사항에 1가지 이상이라도 해당될 시 지원 불가함
  - ※ 만약 허위사실로 사업 신청할 시,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함

## 2

# 세부지원계획

### □ 지원규모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1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총사업비	신청지원금 비율	기업자부담(현금) 비율
100%(지원금+자부담)	총 사업비의 9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산정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 부담

※ 기업자부담(현금)으로 참여인력의 인건비 편성 및 집행 가능

○ 지원내용

	분야	선정규모	기본 지원금	인센티브
지원내용	자유공모 (1차년도)	3개 과제	과제당 160백만원 내외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과제당 10백만원 내외 ※분야 무관 2개사
	지정공모 (2차년도)	1개 과제	과제당 160백만원 내외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조정	
지정공모 상세내용	분야	선정규모	주요내용	기본 지원금
	2차년도	1개 과제	1차년도 최우수기업 대상 후속지원 (1차년도 아이템 고도화 지원)	과제당 160백만원 내외

※ 중간평가 결과 우수한 상위 2개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추가 지원(인센티브는 기업자부담 제외)

※ 지정공모는 `22년 후속지원 선정 과제에 한하며, `23년 자유공모는 3개 과제로 신규 지원, 이후 자유공모는 최종 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정공모(후속지원)과제 선정

### □ 지원요건

○ 세부요건

구분	세부내용		
지원 조건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하는 콘텐츠 제작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li> <li>※ 지원과제에 참여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원의 인건비,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외주용역비 등</li> </ul>	
	지원대상 자격	업 력(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한지 3년 이상 (공고일 기준)</li> <li>* 개인에서 법인 전환 사업자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포괄양도양수계약서 등)</li> </ul>
		업 종(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콘텐츠 기획·제작 업종(유통·서비스 분야 제외)</li> <li>* 지역 외 기업 지원 가능(사업 선정 후 2개월 내 본사 이전 필수)</li> </ul>
	실 적(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콘텐츠를 제작하여 상용화(판매 혹은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1건 이상)</li> </ul>	

		고용유지 또는 투자 실적 (필수 택일)	선택1 ·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최소 5명 이상 유지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유지(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유지) 선택2 · 콘텐츠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매출 실적 (필수 택일)	선택1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법인 * 전년도 연구개발비 3천만원 이상 / 관련 증빙 필수 확인 선택2 · 최근 결산년도 3개년 재무제표 기준 연평균 매출 3억원 이상								
	내부인력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사업비(국고보조금+기업부담금) 내 내부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li> <li>※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필수, 협약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li> <li>※ 제작지원 과제 수행을 위한 직접고용인력(신입/경력, 프로젝트 참여기간)에 한해 참여비율로 편성 가능</li> <li>※ <b>대표자 인건비는 참여율 50%, 월 지급액 300만원 이하로 제한</b></li> <li>※ 타 단순 인건비 지원사업(청년채용,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수혜 중인 인력의 경우, 참여인력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세부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를 0원으로 작성하여야 함(인건비를 중복으로 계상할 수 없음 / 비고 칸에 인건비 수혜사업명 작성 필수)</li> <li>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 적용</li> <li>※ 최저임금 준수 가이드 : 임금(급여) 지급방식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총 임금(급여)을 근로시간을 나누었을 때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2023년 기준 9,620원/시간당) 이상이어야 함</li> </ul>									
	인권보호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콘텐츠 제작 시 ① 인권 보호, ② 외국인 차별 금지, ③ 장애인 인격가치 훼손 금지 관련 가이드 준수</li> <li>참여인력 안정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다소 위험성이 높은 촬영-제작에 따른 국내외 출장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li> <li>※ 항공수상-추격-폭발 장면 및 오지 촬영 등 다소 위험성이 높은 촬영 및 제작 진행시에 한하여 상해 및 여행자 보험료 사업비 편성 가능</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콘텐츠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함</li> <li>※ 개발 미완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 환수(환수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청구함)</li> <li>협약종료 전까지 완성된 콘텐츠에 대하여 국내외 방송-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방영, 해외진출 등 성과(시청률, 조회 수, 계약체결, 매출액, 구독자수 등)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li> </ul>									
	E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점수 부여(신규채용 1명당 1점)</li> <li>※ 신규채용계획 인원이 3명을 초과할 경우 최대 3점까지만 부여(최소 3개월 유지)</li> </ul>									
가점 사항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인 경우 가산점 부여(1점)</li> <li>※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인 경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93, 부평테크시티 9-10층)</li> </ul>									
	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시 50% 지급</li> <li>2차 지원금 : 중간평가 시 “계속 지원”으로 평가될 경우 50% 지급</li> <li>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사항</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제출시기</th> <th>보험금액</th> <th>보험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이행보증보험증권</td> <td>1차 지원금 신청 시</td> <td>지원금 전액(100%)</td> <td>협약기간+60일</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b>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시 협약 취소</b></li> <li>※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타 서류로 대체 불가함</li> </ul>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보증보험증권	1차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 전액(100%)	협약기간+60일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보증보험증권	1차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 전액(100%)	협약기간+60일								
	지원금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집행</b></li> <li>※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집행된 부가가치세는 환수대상임</li> <li>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해당분만 인정됨</li> <li>※ 협약 전 집행금액 소급 및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금액은 인정되지 않음</li> <li>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에 의해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될 시 집행여부와 관계 없이 환수될 수 있음</li> <li>모든 사업비는 <b>사업비 산정기준(별첨)</b>에 따라 적정한 증빙자료를 갖춰 집행해야 함</li> </ul>									

※ 지원대상 자격의 "필수 택일"에서 선택사항 1개 이상이 충족 되어야 함

(ex. 필수 : 고용유지 또는 투자 실적 중 택 /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매출 실적 중 택)

○ 의무이행활동

구분	세부내용	비고
프로그램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콘텐츠기업 멤버십 프로그램 참여</li> </ul>	1회 이상
지원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과제의 최종산출물 내 지원문구 명시 필수</li> </ul>	결과물 내
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과제에 대한 요청자료 제출 필수</li> <li>※ 사업수행 관련 자료, 사후 결과조사(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정보공시 등</li> </ul>	요청 시

### 3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3. 3. 6.~2023. 4. 3. 14:00까지
-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는 '비즈오케이(Biz-OK)'를 가입하여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많아 시스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를 완료** 요망
- 비즈오케이 시스템 이외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 비즈오케이 내 첨부파일 업로드 시, 신청서류 내역별 폴더를 생성하고 각 폴더 내 파일을 수록하여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분야)과제명' 폴더 > 제출 서류별 폴더 > 파일수록 (기업명.zip)
  - 주관기관/참여기관 개별 제출되는 서류의 경우, 파일명으로 기업을 구분하여 수록
- 서류 제출 파일리스트 예시

이름	수정된 날
1. 사업신청서	2019-09-
2. 세부사업계획서	2019-09-
3. 참여인력 총괄표	2019-09-
4. 참여인력 이력사항	2019-09-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2019-09-
6.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2019-09-
7. 사업참여 협약서	2019-09-
8. 사업자 부담금 출자 협약서	2019-09-
9. 사업자등록증	2019-09-
10. 법인등기부등본	2019-09-
11. 재무제표	2019-09-
12. 국제 지방세 완납증명서	2019-09-
13.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2019-09-
14. 기타 추가자료	2019-09-

  

이름	수정된 날
(시제품 제작지원) 진화경 캐릭터 비비 TV시리즈 애니메이션 티저 영상 제작	2019-09-
(시제품 제작지원) 진화경 캐릭터 비비 TV시리즈 애니메이션 티저 영상 제작 > 1. 사업신청서	2019-09-
(시제품 제작지원) 진화경 캐릭터 비비 TV시리즈 애니메이션 티저 영상 제작 사업신청서	2019-09-
(시제품 제작지원) 진화경 캐릭터 비비 TV시리즈 애니메이션 티저 영상 제작 사업신청서	2019-09-

  

이름	수정된 날
(시제품 제작지원) 진화경 캐릭터 비비 TV시리즈 애니메이션 티저 영상 제작 > 참여인력 이력사항	2019-09-
(주관기관 A사) 참여인력 이력사항	2019-09-
(주관기관 A사) 참여인력 이력사항	2019-09-
(참여기관 B사) 참여인력 이력사항	2019-09-
(참여기관 B사) 참여인력 이력사항	2019-09-

■ 공통 제출 파일(예)

■ 주관/참여 구분 제출 파일(예)

## □ 제출서류

### ○ 신청서류

구분	NO	제출서류	제출여부		형식	비고
			주관	참여		
필 수	1	• 사업신청서 ※ 인감 날인 후 제출	공동작성		• PDF	서식1
	2	• 세부사업계획서	공동작성		• PDF	서식2
	3	• 참여인력 총괄표	공동작성		• PDF	서식3
	4	• 참여인력 이력사항	0	0	• PDF	서식4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 전원 서명 후 제출	공동작성		• PDF	서식5
	6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인감 날인 후 제출	0	0	• PDF	서식6
	7	• 사업참여 협약서 ※ 인감 날인 후 제출	0	0	• PDF	서식7
	8	• 콘텐츠 상용화 또는 콘텐츠 수출 실적 증빙 자료 ※ 계약서, 실적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0		• PDF, JPG 등	
	9	•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이후 발급분	0	0	• PDF, JPG 등	
	10	•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0	0	• PDF, JPG 등	
	11	• 최근 3개년 결산년도 재무제표(2020~2022년 재무제표) ※ 단, 결산년도 미도래 시 2019~2021년 재무제표	0	0	• PDF, JPG 등	
	12	• 국세 · 지방세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0	0	• PDF, JPG 등	
	13	• 콘텐츠 투자 계약서 사본(지원요건 해당 시) ※ 첫페이지(투자금액)와 마지막페이지(날인)만 스캔	0		• PDF, JPG 등	
	14	• 기업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지원요건 해당 시)	0		• PDF, JPG 등	
	15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지원요건 해당 시)	0	0	• PDF, JPG 등	
선 택	16	• 신규채용 협약서 ※ 해당 시	0		• PDF, JPG 등	서식8
	17	• 기타 서류 ※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등	0	0	• PDF, JPG 등	

※ 신청기업의 <기업신용정보>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평가자료에 반영예정

○ 발표자료 : 적격검토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접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발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PT 또는 PDF 1식(자유양식)</li> <li>※ 필요 시, 서체, 동영상 등 포함 제출</li> </ul>	담당자 이메일 (di5310@itp.or.kr)	2023. 4. 18. 14:00까지

○ 협약서류

구분	NO	제출서류	제출여부		형식	비고
			주관	참여		
협약	1	• 인감증명서	○	○	• PDF	
	3	• 사업비 전용 통장 사본 및 잔액증명서	○	○	• PDF	
	4	• 사업자 부담금 출자 협약서 <b>※ 인감 날인 후 제출</b>	○	○	• PDF	
	5	• 지원과제 중복수혜여부 확인서	○	○	• PDF	
	6	• 인권존중 의무이행 서약서 <b>※ 인감 날인 후 제출</b>	○	○	• PDF	
	7	• 임금체불 근절 서약서 <b>※ 인감 날인 후 제출</b>	○	○	• PDF	
	8	• 성희롱·성폭력 예방(근절) 서약서 <b>※ 인감 날인 후 제출</b>	○	○	• PDF	
	9	• 청렴서약서 <b>※ 인감 날인 후 제출</b>	○	○	• PDF	
	10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b>※ 인감 날인 후 제출</b>	○	○	• PDF	

○ 지원금 교부서류

구분	NO	제출서류	제출여부		형식	비고
			주관	참여		
교부	1	• 지원금 교부신청서 <b>※ 인감 날인 후 제출</b>	○	○	• PDF	
	2	• 기업부담금 이체확인증	○	○	• PDF	
	3	• 이행보증보험증권 ※ 보험기간 : 협약일 ~ 2024. 2. 28. ※ 보험가입금액 : 국고보조금 선정금액	○	○	• PDF	

## □ 신청기업 유의사항

### ○ 일반사항

- 본 사업의 신청, 사업 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안내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상기 공고 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사업신청

- 사업신청 시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제출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접수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접수 불가함에 따라 사업담당자에게 접수 청탁연락 금지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사업의 선정 및 취소

- 공정한 기준을 통해 평가를 이행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의심하는 항의행위 금지
-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이후 전담기관(ITP)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컨소시엄 내 한 개 기업이라도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접수 무효 및 선정 취소
- 선정기업의 사유로 사업 포기,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 중복수혜 등 지원 취소사유 발생 시에는 사업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포기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수행기관의 서류 허위제출 등의 사항에 따른 제재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ITP)은 사업즉시 중단,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유관기관에게 제재사항 안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전담기관(ITP)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도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사업추진

- 본 사업은 ‘본사가 인천 소재인 콘텐츠기업’ 대상 사업이므로 사업 선정 후 지원기간 중 본사를 인천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선정기업이 부담함
- 과제수행기관은 사업예산(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별 정산보고서 제출 후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회계검증 및 최종 정산결과에 따라 불인정금액 및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타당한 사유 없이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과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성과관리

- 본 사업의 결과물은 전담기관(ITP) 또는 관련기관에서 지원성과물로 활용·전시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향후 3년 간 사후 결과조사(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함

# 4

## 추진절차 및 일정

### □ 추진절차



※ 추진절차는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 추진일정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										
기업모집		■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과제수행				■	■	■	■	■	■	■	■
현장점검						■			■		
평가정산							■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5

# 선정방법 및 기준

### □ 선정방법

#### ○ 선정절차

단계	구분	주요내용
1차	적격검토	○ 제출서류 확인 및 참가 적격 여부 검토 (자격여부 확인) ○ 관련 규정에 따른 기 지원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 확인 ○ 지원사업 및 채무 여부 확인 등
2차	발표평가	○ PT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수행능력 평가 ○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과제내용, 수행역량 등에 대해 평가 ○ 평가점수 산출 시 가점사항 반영

※ 단, 적격검토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이 지원과제수의 3배를 초과할 경우 발표평가 이전 서류 평가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음

#### ○ 선정기준

- 최고 ·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적격’으로 간주하며, 적격 해당 시 고득점 순으로 과제 선정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동점지원과제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방법

① 최고 · 최저점을 포함하여 평가점수 총점이 높은 과제

② 고배점 평가항목(과제내용)의 총점이 높은 과제

- 선정 후 선정과제의 타 지원사업 중복지원, 중도포기 등을 대비하여 ‘적격’ 대상에 한해 모집 과제 수(4개)만큼 예비과제로 선정

※ 예비과제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함(기간 내 선정과제의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협약 추진)

- 발표평가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의 최종 지원여부 결정 및 기업이 제안한 사업비에 대해 감액 조정을 진행함

#### ○ 통보방법

- 발표대상 : 적격검토 후 개별 통보

- 최종선정 : 인천TP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업 개별 안내

### □ 적격검토

#### ○ 검토방법 : 제출서류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 검토

-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마감이후 기업의 요청으로 신청서류 추가 제출 및 보완 불가

○ 제외기준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 ※ 서류 내 기재된 내용의 공신력 및 효력이 없으므로 미제출로 간주
-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할 경우
-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으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참가기준 자격검증 서류의 내용 상 참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발표평가

-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산업분야, 기업지원, 예산·회계 등) 7인으로 구성
  - 평가위원 예비명부(3배수) 추첨순위에 따라 섭외 및 구성
- 평가항목
  - 자유공모 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참조사항	배점
기획 우수성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이해도 및 사업의 목적의 부합성</li> <li>• 콘텐츠 제작기획의 구체성, 현실성, 차별성, 참신성</li> </ul>	제작계획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안의 착수 개시기능 수준의 구체성, 현실성 확보여부</li> <li>• 세부적인 사업화 계획 수립여부(3개년 로드맵 수립 등)</li> </ul>	제작계획	15
수행기관 역량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책임자의 과제 수행 의지, 각오</li> <li>•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li> </ul>	발표내용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또는 기업의 전문성 여부(유사과제 수행경험 포함)</li> </ul>	대표자이력, 기업소개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인력 확보(정규/비정규/용역) 여부</li> <li>•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또는 학위) 여부</li> </ul>	참여인력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신용데이터 정보조회</li> </ul>	신용평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li> <li>• 사업비 편성내역의 사업 목적 부합 여부</li> </ul>	예산편성표	10
성공 가능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영, 본편 제작, 상용화 등 발전 가능성</li> <li>• 다양한 매체 및 분야로 활용·접목 등 콘텐츠 확장가능성</li> <li>• 시장의 타 콘텐츠와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여부</li> </ul>	제작계획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한 목표(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li> </ul>	제작계획	10
일자리창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창출 : 본 과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최대 3점)</li> <li>- 신규고용 1인 당 1점, 최대 3점</li> </ul>	확약서	3
우대사항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 기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93, 9~10층)</li> </ul>	사업자 등록증	1
<b>합 계</b>			<b>100(101)</b>

- 지정공모 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참조사항	배점
기획 우수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이해도 및 사업의 목적의 부합성</li> <li>콘텐츠 고도화 및 사업화 기획의 구체성, 현실성, 차별성, 참신성</li> </ul>	제작계획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획안의 착수 개시기능 수준의 구체성, 현실성 확보여부</li> <li>세부적인 사업화계획 수립여부(3개년 로드맵 수립 등)</li> </ul>	제작계획
수행기관 역량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행책임자의 과제 수행 의지, 각오</li> <li>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li> </ul>	발표내용	10
		대표자이력, 기업소개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또는 기업의 전문성 여부(유사과제 수행경험 포함)</li> <li>참여인력 확보(정규/비정규/용역) 여부</li> <li>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또는 학위) 여부</li> </ul>	참여인력	5
		기업신용데이터 정보조회	신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li> <li>사업비 편성내역의 사업 목적 부합 여부</li> </ul>	예산편성표	4
성공 가능성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콘텐츠 상용화 및 시장 확대 가능성</li> <li>시장의 타 콘텐츠와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여부</li> <li>제시한 목표(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li> <li>목표시장, 사업화(마케팅, 유통 등) 및 투자 계획의 적합성</li> </ul>	제작계획	20
		제작계획	20
일자리창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창출 : 본 과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li> <li>- 신규고용 1인 이상</li> </ul>	확약서	1
우대사항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 기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93, 9~10층)</li> </ul>	사업자 등록증	1
합 계			100(101)

※ 지정공모는 2년차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평가점수 70점 이하 시 1회 보완 재평가 실시, 재평가에서도 미달 시 신규 지원과제 추가 모집, 선정

□ 지원금 조정심의

-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를 토대로 과제 지원금 조정
- 지원예산 적정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참조사항	배점	
사업예산	예산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예산의 적정성</li> <li>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li> <li>사업비 편성내역의 사업 목적 부합 여부</li> </ul>	예산편성표	10
			매우 적정	10
			적정	8
			약간 부적정	6
			부적정	4
매우 부적정	2			

○ 적정성 등급 별 지원규모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평균점수	8.5점 이상	6.5점 이상 8.5점 미만	4.5점 이상 6.5점 미만
지원규모	170백만원	160백만원	150백만원

첨부 신청서식 1부. 끝.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10., 2011. 5. 25., 2014. 1. 28., 2016. 3. 29., 2020. 2. 11., 2020. 12. 8.>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